

의안번호	2217715
의 퇴 인	조지연 의원
회 답 일	2026. 3. 26.
추 계 번호	26F16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청년 등 우대 상시근로자
고용증가분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 공제)	○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청년 등 우대 상시근로자 고용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인상 ※우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전환 등 (현행) <table><tr><th colspan="3">구분</th><th></th><th>기본</th><th>우대</th></tr><tr><td rowspan="10">공 제 액</td><td rowspan="6">중 소</td><td rowspan="3">수도권</td><td>1년</td><td>400</td><td>700</td></tr><tr><td>2년</td><td>900</td><td>1,600</td></tr><tr><td>3년</td><td>1,000</td><td>1,700</td></tr><tr><td rowspan="3">지방</td><td>1년</td><td>700</td><td>1,000</td></tr><tr><td>2년</td><td>1,200</td><td>1,900</td></tr><tr><td>3년</td><td>1,300</td><td>2,000</td></tr><tr><td rowspan="4">중견</td><td>1년</td><td>300</td><td>500</td></tr><tr><td>2년</td><td>500</td><td>900</td></tr><tr><td>3년</td><td>500</td><td>900</td></tr><tr><td rowspan="2">대기업</td><td>1년</td><td>—</td><td>300</td></tr><tr><td>2년</td><td>—</td><td>500</td></tr></table> (개정안) <table><tr><th colspan="3">구분</th><th></th><th>기본</th><th>우대</th></tr><tr><td rowspan="14">공 제 액</td><td rowspan="6">중 소</td><td rowspan="3">수도권</td><td>1년</td><td>400</td><td>700</td></tr><tr><td>2년</td><td>900</td><td>1,600</td></tr><tr><td>3년</td><td>1,000</td><td>1,700</td></tr><tr><td rowspan="3">지방</td><td>1년</td><td>700</td><td>1,000</td></tr><tr><td>2년</td><td>1,200</td><td>1,900</td></tr><tr><td>3년</td><td>1,300</td><td>2,000</td></tr><tr><td rowspan="6">중 견</td><td rowspan="3">수도권</td><td>1년</td><td>300</td><td>500</td></tr><tr><td>2년</td><td>500</td><td>900</td></tr><tr><td>3년</td><td>500</td><td>900</td></tr><tr><td rowspan="3">지방</td><td>1년</td><td>300</td><td>650</td></tr><tr><td>2년</td><td>500</td><td>1,050</td></tr><tr><td>3년</td><td>500</td><td>1,050</td></tr><tr><td rowspan="2">대기업</td><td>1년</td><td>—</td><td>300</td></tr><tr><td>2년</td><td>—</td><td>500</td></tr></table>	구분				기본	우대	공 제 액	중 소	수도권	1년	400	700	2년	900	1,600	3년	1,000	1,700	지방	1년	700	1,000	2년	1,200	1,900	3년	1,300	2,000	중견	1년	300	500	2년	500	900	3년	500	900	대기업	1년	—	300	2년	—	500	구분				기본	우대	공 제 액	중 소	수도권	1년	400	700	2년	900	1,600	3년	1,000	1,700	지방	1년	700	1,000	2년	1,200	1,900	3년	1,300	2,000	중 견	수도권	1년	300	500	2년	500	900	3년	500	900	지방	1년	300	650	2년	500	1,050	3년	500	1,050	대기업	1년	—	300	2년	—	500
구분				기본	우대																																																																																																		
공 제 액	중 소	수도권	1년	400	700																																																																																																		
			2년	900	1,600																																																																																																		
			3년	1,000	1,700																																																																																																		
		지방	1년	700	1,000																																																																																																		
			2년	1,200	1,900																																																																																																		
			3년	1,300	2,000																																																																																																		
	중견	1년	300	500																																																																																																			
		2년	500	900																																																																																																			
		3년	500	900																																																																																																			
		대기업	1년	—	300																																																																																																		
2년	—		500																																																																																																				
구분				기본	우대																																																																																																		
공 제 액	중 소	수도권	1년	400	700																																																																																																		
			2년	900	1,600																																																																																																		
			3년	1,000	1,700																																																																																																		
		지방	1년	700	1,000																																																																																																		
			2년	1,200	1,900																																																																																																		
			3년	1,300	2,000																																																																																																		
	중 견	수도권	1년	300	500																																																																																																		
			2년	500	900																																																																																																		
			3년	500	900																																																																																																		
		지방	1년	300	650																																																																																																		
			2년	500	1,050																																																																																																		
			3년	500	1,050																																																																																																		
	대기업	1년	—	300																																																																																																			
		2년	—	500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청년 등 우대 상시근로자 고용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 인상하므로 법인세 감소가 예상됨
 - 중견기업의 경우, 수도권 소재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 유지기간에 따라 1인당 500~900만원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우대 상시근로자 고용증가분에 대

한 세액공제액이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고용증가분에만 150만원 인상됨에 따라, 해당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견기업은 1인당 650~1,050만원의 공제액을 최대 3년간 적용받을 수 있음

[표 1] 통합고용세액공제 신고 현황: 2024년 신고기준

(단위: 개, 억원)

	중소기업		일반법인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수도권	43,728	6,366	2,467	1,885
비수도권	11,529	1,738	591	306

주: 고용유지기간별 공제액 확대 구조 도입 이전, 종전 제도에 따라 신고된 금액 기준
 자료: 국세통계연보

-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액 인상의 세수효과를 추계하려면, 향후 지역별(수도권/지방) 중견기업의 우대 상시근로자 증가 규모에 대한 전망치와 유형별 과세정보를 결합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자료가 부재함
- 2025년 세법개정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전면 재설계되어 적용이 개시된 현시점에서는, 이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실적정보 및 과세자료가 아직 축적되지 않았음

(~2025)						(2026~)						(개정안)					
구분			기분			구분			기분			구분			기분		
공 제 액	중 소	수도권	1년	850	1,450	중 소	수도권	1년	400	700	공 제 액	중 소	수도권	1년	400	700	
			2년	상동	상동			2년	900	1,600				2년	900	1,600	
			3년	상동	상동			3년	1,000	1,700				3년	1,000	1,700	
		지방	1년	950	1,550		지방	1년	700	1,000			지방	1년	700	1,000	
			2년	상동	상동			2년	1,200	1,900				2년	1,200	1,900	
			3년	상동	상동			3년	1,300	2,000				3년	1,300	2,000	
	중견	1년	450	800	중견	1년	300	500	중 견	수도권		1년	300	500			
		2년	상동	상동		2년	500	900				2년	500	900			
		3년	상동	상동		3년	500	900				3년	500	900			
	대기업	1년	—	400	대기업	1년	—	300	대기업	지방		1년	300	650			
		2년	—	상동		2년	—	500				2년	500	1,050			
															3년	500	1,050
															1년	—	300
															2년	—	500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청년 등 우대 상시근로자 고용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인상하는 안의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

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유섭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유섭	02-6788-4838	useuplee@assembly.go.kr